##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2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이주영·김준형·천하람

이준석 · 채현일 · 김용태

김석기 · 서천호 · 한정애

이연희 • 윤재옥 • 윤상현

한지아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 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법률 제 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 2.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한 <u>분만(分</u>			
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u>호의</u>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			
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u> &lt;신 설&gt;</u>	1.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u>&lt;신 설&gt;</u>	2. 응급 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